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8
----------	-----

제출년월일 : 2017.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2016. 12. 2. 신설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르면 ‘도시림등’의 대상을 도시림·생활림·가로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에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가로수 심의 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가로수 위원회”를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평창군의 녹지경관을 조성·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가로수 위원회’를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정비함.

- 조례안 제6조(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도시림등의 대상을 도시림·생활림·가로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명을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에서 “평창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로 개정함에 따라 가로수에 국한되어 있던 조성·관리 범위를 기본법과 일원화하고 심의사항을 정비함.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관리대상 및 적용범위)
- 조례안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다. 그 밖에 준용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 조례안 제13조(부담금의 강제징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9.4 ~ 2017.9.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사항 반영완료

-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함

5)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를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평창군 도시림등(도시림·생활림·가로수)”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로수를”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도시림등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관리청”이란 조경시설과 가로수를 관리하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3.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의 기상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4. “가로수 보호틀”(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의 균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 삭제

8. 삭제

제3조의 제목 “(관리대상)”을 “(관리대상 및 적용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정한 도로와 이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상으 로”를 “대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평창군 행정구역내 가로수”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림등”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리청)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에

따라 군 행정구역 내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도로의 가로수 관리청은 별표 3과 같이 조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의사유”를 “등의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계획”을 “군수는 계획”으로, “가로수위원회”를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가로수위원회)”를“(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수 관련”을 “군수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으로, “가로수위원회”를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가로수”를 각각 “도시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를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도시림등 및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도시림등 관련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평창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
4. 평창군 산림관련 공무원

⑤ 간사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이라도”를 “임기 전이라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할”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누설할”을 “누설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야기할”을 “야기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될”을 “인정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표 4]”를 각각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로수의생육·식재”를 “가로수의 생육·식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5]”를 “별표 5”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기관에서는 [별표 6]”을 “행정기관에서는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6]의”를 각각 “별표 6의”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배수관로및”을 “배수관로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대해서도제1호”를 “대해서도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포함되었 는지”를 “포함되었는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실시하여야함”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대해서도 제1호”를 “대해서도 제1호”로 한다.

제11조 중 “[별표 7]”을 “별표 7”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외의자(이하 ‘원인자’”를 “외의 자(이하 “원인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서식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청은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별표 8]”을 “별표 8”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가산금을”을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가산금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고인”를 ““신고인””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9]”를 “별표 9”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서식 2]”를 “별지서식 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서식 3]”을 “별지서식 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타 당성”을 “타당성”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 한”을 “대한”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별표 7]”을 “별표 7”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9조 후단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을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u>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조성 및 유지·관리하고,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 “<u>가로수</u>”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p> <p>1. 「<u>도로법</u>」 제10조에 따른 <u>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u></p> <p>2.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2조제2항</p>	<p><u>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 「<u>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u>평창군 도시림등(도시림·생활림·가로수)-----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도시림등을 -----</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삭제</u></p> <p>2. “<u>관리청</u>”이란 <u>조경시설과 가로수를 관리하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를 말한다.</p> <p>3. “<u>가로수 지주대</u>”란 <u>가로수의 기상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u></p>

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② “관리청”이란 조경시설과 가로수를 관리하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한다)를 말한다.

③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의 기상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④ “가로수 보호틀”(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⑤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⑥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

4. “가로수 보호틀”(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 삭제

8. 삭제

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⑦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⑧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상) ① 법 제2조제6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정한 도로와 이 조례[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

제3조(관리대상 및 적용범위)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정한 도로와 이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 -----

로수는 [별표 2]와 같다.

③ 녹지공간 조성 및 기타 경관을 목적으로 조성된 수목도 관리 대상으로 한다.

④ 이 조례는 평창군 행정구역 내 가로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리청)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고시)’에 따라 평창군 행정구역내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도로의 가로수 관리청은 [별표 3]과 같이 조정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림 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 9. (생략)

③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위원회

----- 별표 2-----.

③ -----

- 대상으로 -----.

④ -----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림 등--.

제4조(관리청)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에 따라 군 행정구역 내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도로의 가로수 관리청은 별표 3과 같이 조정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
--.
----- 등의 사유-----
-----.

1. ~ 9.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계획-----
----- 평창군 도시림

또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

제6조(가로수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가로수위원회를 운영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생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서 신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가로수, 조경 등에 관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
--.

제6조(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
-----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 도시림등

3. 도시림등 -----

4. (현행과 같음)
5. -----
----- 사항. 단,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
-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 가로수(녹지, 조경 포함)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군 산림관련 공무원, 기타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생략)

⑤ 간사는 가로수 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가로수 업무 담당자로 한다.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의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도시림등 및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도시림등 관련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평창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

4. 평창군 산림관련 공무원

④ (현행과 같음)

⑤ 간사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⑧ ~ ⑩ (생략)

제8조(식재기준) ① 평창군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평창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⑥ -----
한 차례만 연임-----

--.

⑦ -----

-- 임기 전이라도 -----
-----.

1. -----
-- 아니한 --
2. -----
----- 누
설한 --
3. -----
----- 야기한 --
4. -----
----- 인정된 --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8조(식재기준) ① -----

-- 별표 4-----

-----.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식재공간 및 예산을 확보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전 가로수(녹지) 담당부서와 협의 후 사업을 계획·결정·발주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이나 폐지된 도로의 아스팔트로 인하여 가로수의생육·식재가 어렵거나, 가로수를 수시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 경우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평창군의 가로수는 [별표 5]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규격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9조(관리시설물) ① (생략)

② 새로 신설되거나 개조·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별표 6]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기준을 마련, 가로수 담당부서

② -----

- 별표 4-----

-----.

③ -----

가로수의 생육·식재-----

-----.

④ (현행과 같음)

⑤ ----- 별표 5-----

-----.

제9조(관리시설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 행정기
관에서는 별표 6-----

와 협의 후 설치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6]의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담당 부서 및 기타 시공자는 계획·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식재공간 및 예산을 반영하여 가로수 관리청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보도에 새로이 상·하수도 배수관로 및 전기시설 등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인해 가로수의 수형·생육 및 관리시설물에 지장을 줄 경우
8. 기타 녹지공간 조성 및 경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

③ -----
----- 별표 6의 -----

----- 별표 6의 -----
-----.

제10조(조성협의 등)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

- 배수관로 및 -----

8. -----

대해서도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가로수 식재 기준 및 관리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설계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단, 식재설계는 조경 자격증이 있는 자가 실시하여야함
2. ~ 6. (생략)
7. 기타 녹지공간 조성 및 경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병해충 방제) 관리청은 가로수에 발생하는 돌발해충 및 주요해충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라 적기에 방제하여야 한다.

제12조(원인자 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 외의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

-----.

② -----

-----.

1. -----

- 포함되었는지-----.

----- 실시하여야 함

2. ~ 6. (현행과 같음)

7. -----

대해서도 제1호-----
-----.

제11조(병해충 방제) -----

----- 별표 7-----
-----.

제12조(원인자 비용부담) ① ----

-- 외의 자(이하 “원인자”-----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의 기관이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1]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청은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⑧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제13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생략)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 및 독

-----.

② ----- 별지 제1호 서식-----.

③ -----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청은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 별표 8-----.

제13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가산금을 --.

측)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15조(신고 등) ① 관리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손괴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 신고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2]를 작성하고 현장사진 등 증거물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제3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서식 3]의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고 등) ① -----

--- “신고인”-----
---- 범위-----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9-----.

③ -----
----- 별지서식 2-----
-----.

④ -----
----- 별지서식 3-----

-----.

1.·2. (현행과 같음)

3. -----

발생된 도로의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 당성 검토

4. (생략)

제16조(주민참여 등) ① (생략)

② 가로수관리청은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
민들에 대 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한다.

1. ~ 4. (생략)

제17조(점검) ① (생략)

② 관리청은 [별표 7]의 병해충
발생시기 전·후에 수종별로 수
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 ① (생략)

② 관리청은 제16조에 의한 정
기점검 결과를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19조(자료유지) 관리청은 가로
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
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
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
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
조제4항에 의한 가로수관리대
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
여야 한다.

-- 타당성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주민참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대한 -----
-----.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7-----

-----.

제18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7조-----

-----.

제19조(자료유지) -----

----- 시행규칙 제24조제4
항-----

-----.

관계법령 발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9.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

시립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립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립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립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6.12.2.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용추계 미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산림과장 주현관
연락처	(033) 330 - 2450